세출(지출) 사업별 사업설명자료

사 업 명
병역판정검사(1131-301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	병무청	병역자원국		040	044
명칭					국방	병무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1	301
명칭	병역자원선발	선병활동	병역판정검사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3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명	2018년 결산액	2019년 예산액(A)		2020년 예산액(B)		증감	
		본예산	추경	본예산	추경	금액 (B-A)	증감률(%) ((B-A)/A)
병역판정검사	20,685	18,412	18,412	19,510	19,510	1,098	6.0

4. 사업목적

- 공정하고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로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자원 선발
- 병역판정검사 장비 적기구입 등 필요경비 지원으로 원활한 병역판정검사 수행
- 사이버 병역면탈 조장 행위 차단, 확인신체검사 등을 통한 사전 병역면탈 예방 활동
- 특사경 수사활동을 통해 병역면탈 기도 행위 엄정 대응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병역법 제11조(병역판정검사)
- 병역법 제14조(병역처분)
-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(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)

② 추진경위

- 1949년도 : 최초 병역판정검사 실시
- 1970년도 : 병무청 창설('70. 8.20.) 이후 시·군·구 단위로 이동 병역판정검사(순회) 실시
- 1971년도 : 병역판정검사를 병무청장이 관장
- 1984년도 : 만 19세자에 대하여만 병역판정검사 실시
- 1995년도 : 거주지 단위 병역판정검사 실시
- 2001년도 : 병역판정검사의 완전 전산화, 군의관을 병역판정전담의사로 전원 대체
- 2002년도 : 중앙신체검사소 개소 운영
- 2006년도 : 병역판정검사 일자/장소 본인선택 전면실시
- 2009년도 : 수검자 전원 AIDS검사 실시 및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국고 지원
- 2012년도 : 특별사법경찰 제도 시행, 재병역판정검사 실시
- 2016년도 : 심리검사 제도개선, 군복무 부적합자 선별 강화
  · 심리 취약자로 정신과 치료 필요한 수검자에 대한 경과관리제도 도입, 치료 유도
- 2017년도 : 수검자 전원 잠복결핵검사 실시 및 건강검진결과서 제공
- 2018년도 : 수검자 전원 백혈구감별검사 실시 및 의무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용 국고 지원
- 2019년도 : 당화혈색소 검사 실시로 병역판정검사의 정확성 제고

6.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계속사업
- 사업규모 :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(단위 : 백만원)

연도	2015	2016	2017	2018	2019
사업비	8,775	8,923	24,113	21,086	18,412
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병무청
- 사업수혜자 : 병역의무자(병역판정검사 대상자)

7. 사업 집행절차

병역준비역 자원관리

▪ 17세 병역준비역 편입대상자 조사	▪ 행정안전부,법원행정처 전산자료 일괄 인수 - 주민전산자료, 가족관계등록 전산자료
▪ 18세 병역준비역 편입	▪ 대한민국 남자로서 만18세부터 병역의무 발생
▪ 병역판정검사대상자 조사	▪ 매년 7월1일 ~ 9월15일 18세자 조사 - 학력(교육부), 자격·면허(경찰청 등), 신상변동(행정안전부)

병역판정검사

통 지	검사실시	병역처분	
▪ 일자/장소 본인선택	▪ 심리검사	합격	▪ 현역(1-3급) ▪ 보충역(4급,고퇴이하)
▪ 미선택자 직권통지	▪ 신체검사	불합격	▪ 전시근로역(5급) ▪ 병역면제(6급) ▪ 재신체검사(7급)
	▪ 적성분류		

《관련제도》 검사규칙 관 리 | 중신검소 운 영 | 외 부 위탁검사 | 진단서 발급비용 지 원 | 전담의사 관 리

병역판정검사 후 재병역처분

병역처분 변 경 원	▪ 대상 : 질병·심신장애로 병역이행 곤란자, 질병치유자 ▪ 방법 : 본인 희망자 ▪ 시기 : 연중
재 병 역 판정검사	▪ 대상 : 현역·보충역 처분 후 4년간 미입영자 ▪ 방법 : 대상자 전원(본인희망 관계없음) ▪ 시기 : 연중

출원·직권 병역감면

장애인	▪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(외관상 명백한 장애인, 장애 등록자)
수형자	▪ 보충역(6월 이상 1년 6월 미만 징역형 등) ▪ 전시근로역(1년 6월 이상 징역형)
귀화자	▪ 전시근로역(귀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 취득)
고 아	▪ 전시근로역(13세 이전 부모 사망, 호적상 부모 없음 등)
군사분계선 이북이주자	▪ 병역면제(북한이탈주민)

사 업 명
현역병모집(1232-303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병무청	입영동원국		040	044
명칭					국방	병무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200	1232	303
명칭	병역자원충원	충원활동	현역병모집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3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명	2018년 결산액	2019년 예산액(A)		2020년 예산액(B)		증감	
		본예산	추경	본예산	추경	금액 (B-A)	증감률(%) ((B-A)/A)
현역병모집	651	994	994	1,174	1,174	180	18.1

4. 사업목적

- 각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특기(직종, 계열)별로 모집 선발하여 적기·적정 충원함으로써 군의 전투력 증강에 기여
- 병역의무자에게 군 복무와 취업, 진로를 연계하는 '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사업' 추진으로 성공적인 군복무와 안정적 사회진출 기반 조성
- 지속적인 개선으로 병역의무자 중심의 모집제도 운영 및 병역이행 자율성 제고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병역법 제20조~제20조의3(현역병의 모집 등)
- 병역법시행령 제28조~제29조의2

② 추진경위

- 각 군 모병업무 병무청 일원화 추진계획('01. 6월)
- 모병업무 일원화 준비단 구성·운영('01. 10. 22.)
- 육군 병 모집업무 시험운영('03년) 후 전담수행('04. 1. 1.)
- 해·공군 병 모집업무 시험운영('08.1~6월) 후 전담수행('08. 7. 1.)
-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도입(육군 '14년, 해·공군 '16년, 해병대 '18년)
-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사업 추진('19년)

6.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계속
- 사업규모 :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(단위 : 백만원)

연도	2015	2016	2017	2018	2019
사업비	895	727	678	652	994
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병무청
- 사업 수혜자 : 병역의무자〔현역병(지원)입영대상자〕

7. 사업 집행절차

모 집 계 획	○ 각 군 참모총장, 다음년도 현역병 모집소요 송부(9. 30.까지) ○ 병무청장,「현역병 모집계획」수립(12. 31.까지) - 모집분야별 지원자격 및 모집일정, 일자별 모집인원 등
모 집 분 야	○ 육군 : 기술행정병, 동반입대병 등 6개 분야 189개 특기(9만 7천여 명) ○ 해군 : 전문특기병 등 4개 분야 17개 계열(9천여 명) ○ 해병 : 전문특기병 등 2개 분야 9개 계열(1만 3천여 명) ○ 공군 : 전문특기병 등 3개 분야 11개 직종(1만 8천여 명)
모 집 홍 보	○ 입영대상자별(자격·전공 등) 맞춤형 정보 제공 ○ 수요자 중심의 홍보매체 활용, 홍보 효과 극대화 * 유튜브 영상·인터넷 포털 배너 홍보, 웹툰·리플릿 제작·배포 등
지원서 접 수	○ 병무청 홈페이지(병무민원포털)
1차 전형	○ 방법 : 서류검사 - 자격·면허, 전공학과, 출결, 가산점 합계점수가 높은 순 ○ 결과 : 휴대폰 SMS 통보, 병무청 홈페이지 게시
2차 전형	○ 병역판정검사 : 병역판정검사 미수검자 ○ 면접 - 육군 : 기술행정병(63개 특기), 전문특기병(32개 특기), 유급지원병 등 - 해군·해병대·공군 : 전 계열(직종) ○ 체력검사 : 해병대(윗몸일으키기, 팔굽혀펴기) ○ 실기평가 : 전문특기병(어학병, 군악병 등) ○ 범죄조회(경찰청)
최 종 선 발	○ 방법 : 배점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전산 선발 ○ 결과 : 휴대폰 SMS 통보, 병무청 홈페이지 게시 ○ 입영통지 : E-mail 발송(지방청장)
입 영	○ 육군(23개) : 육훈, 지작사(18개 사단), 2작사(4개 사단) ○ 해군교육사령부, 해병대교육훈련단, 공군교육사령부

사 업 명
현역병입영(1232-305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	병무청	입영동원국		040	044
명칭					국방	병무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200	1232	305
명칭	병역자원충원	충원활동	현역병입영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3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명	2018년 결산액	2019년 예산액(A)		2020년 예산액(B)		증감	
		본예산	추경	본예산	추경	금액 (B-A)	증감률(%) ((B-A)/A)
현역병입영	400	367	367	325	325	△42	△11.4

4. 사업목적

- 각 군의 현역병 충원계획에 따라 군에서 필요한 우수자원을 적기·적정 충원함으로써 군의 원활한 병력운영 및 전투력 증강에 기여
- 병역이행자 중심의 충원체계 개선과 정확한 자원관리로 민원편익 증진
- 국외병역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로 자원 병역이행 풍토 조성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사업근거

〈현역병입영〉

- 병역법 제15조~19조, 제21조~제23조, 제60조~제61조
- 병역법시행령 제19조~제27조, 제31조~제40조, 제124조~제127조, 제129조
- 병무청 훈령 제1571호(현역병 입영업무 규정), 제1527호(입영연기 관리 규정)

〈국외자원관리〉

- 병역법 제60조 및 제70조
-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, 제145조~149조
- 병무청 훈령 제1598호(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)

② 추진경위

<현역병입영〉

- (1949. 1. 20.) 최초사업 시작

  * 병역법임시조치령(대통령령 제52호. 1949. 1.20.), 병역법 제정(1949. 8. 6.)

- (2001년) 현역병 입영일자/부대 본인선택제 도입
- (2002~2012년) 본인선택제 범위확대(국외입영연기자, 19세입영희망자 등)
- (2016년) 현역병 입영시기 결정체계 개선 : 지역단위 → 전국단위

<국외자원관리〉

- (1962. 10. 1.) 국외여행허가제도 시행
- (1971. 8. 10.) 국외병역자원관리에 대한 재외공관 위임제도 시행
- (2004. 10.) 국외 영주권자 입영원출원제도 시행
- (2007년) 24세 이하자 국외여행허가 및 귀국신고제도 폐지
- (2011년)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신청대상 확대 시행(영주권자 → 국외이주자 전체)

6.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계속사업
- 사업규모 :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(단위 : 백만원)

연도	2015	2016	2017	2018	2019
사업비	481	457	426	408	36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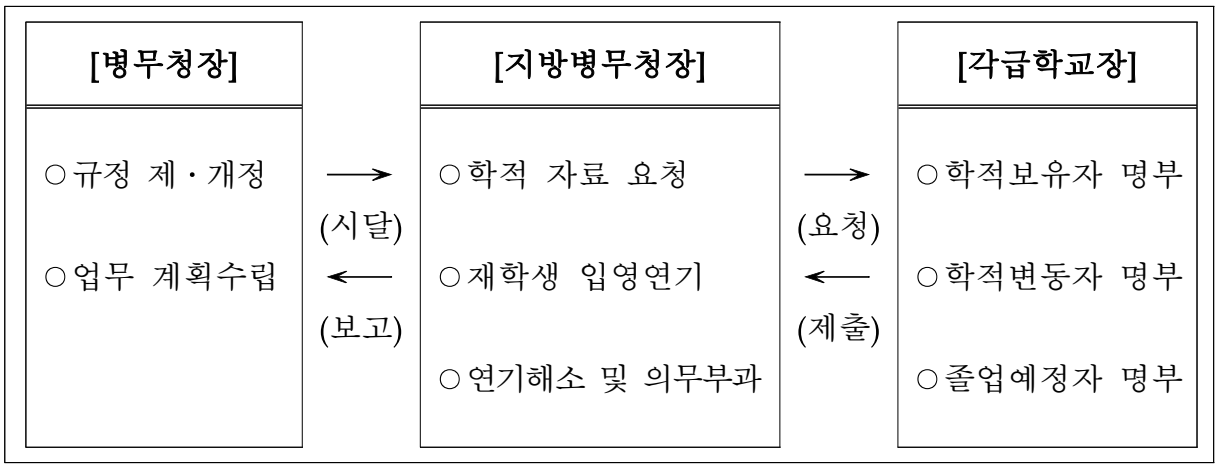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병무청
- 사업 수혜자 : 현역입영대상자

7. 사업 집행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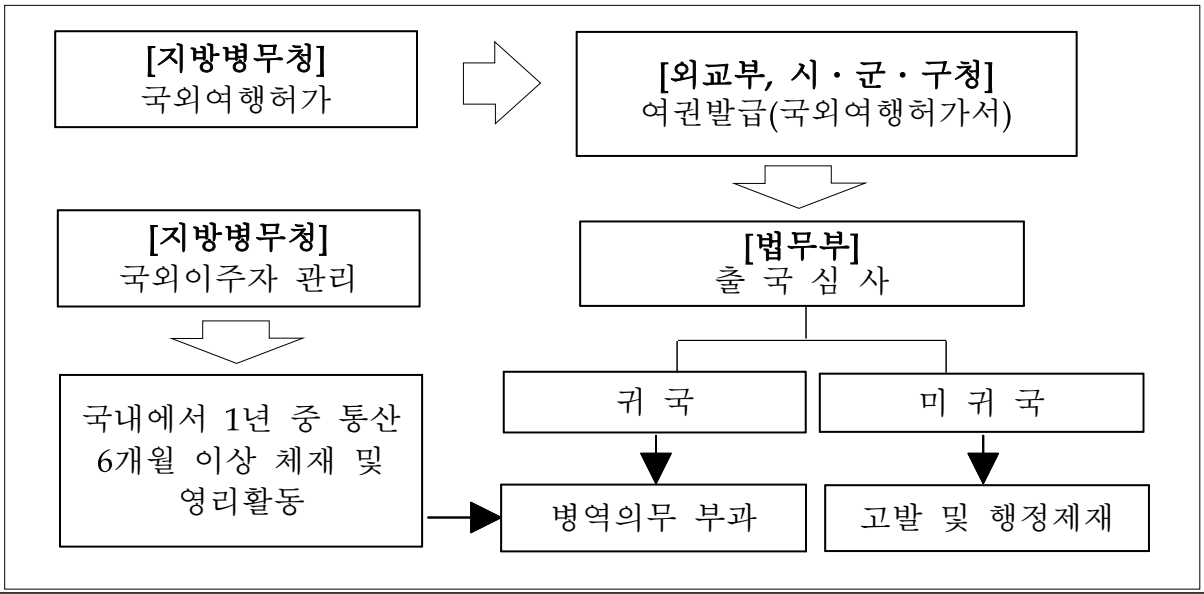
○ 현역병 입영

주관	제목	주요 내용	결정시기	비고
본청	현역병 충원 계획서 접수	각군에서 다음연도 입영부대/입영일자/적성별로 소요인원 요청	매년 9.30까지	각군→병무청
	현역병 입영 계획서 작성	병원배분(입영일자 결정) 계획, 일정 등 수립 (상근예비역 포함)	12월	병무청 →지방청
지방청	상근예비역 선발	지방병무청에서 시·구·읍·면별로 학력, 신체등급, 연령 등 자질 감안 선발	12월	지방청별 선발
본청	재학생입영원 출원자 입영일자 결정	◦ 대상 : 재학생 입영연기중인 사람 ◦ 신청 : 다음연도 입영 희망월 신청 ◦ 결정 : 적성·희망월 등 감안 입영일자 결정	12월	전년도 2월~11월 접수
	입영일자 본인선택 접수/추첨	◦ 대상 : 모든 입영대상자 ◦ 신청 : 매년 12월 중 다음연도 입영일자 일정기간 접수 ◦ 결정 : 전산 추첨 통해 입영일자 결정	12월	
	적령자/졸예자 입영일자 결정	◦ 입영희망자(본인선택 출원자) 우선일자(부대)결정 ◦ 본인선택 미신청자 다음연도 5월 이후 재학생 입영연기 처분 후 직권 결정	◦ 12월말 ◦ 다음연도 5월말	
	별도대기자 입영일자 결정	◦ 입영일자 결정방법 : 별도사유 발생(해소) 일자가 빠른 사람순으로 직권 통지	수시	
	본인선택 추가 선착순 접수	◦ 일자별 군소요 미달시 적정충원 위해 별도 입영자 입영률 등 고려 추가 선착순 접수	수시	
지방청	입영통지	◦ 지방청 → 전자우편센터 자료 전송 - 현역병 입영통지서 및 안내문 - 개인메일 또는 배달증명 우편 발송	입영일 45일전	
	연기 등 민원처리	◦ 기일 연기 등 민원업무 처리	수시	
	인도인접	◦ 유고자 파악, 입영인원 인도 등	입영일	

ㅇ 재학생입영연기



ㅇ 국외자원관리



사 업 명
병력동원소집관리(1232-308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병무청	입영동원국		040	044
명칭					국방	병무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200	1232	308
명칭	병역자원충원	충원활동	병력동원소집관리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3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명	2018년 결산액	2019년 예산액(A)		2020년 예산액(B)		증감	
		본예산	추경 포함	본예산	추경	금액 (B-A)	증감률(%) ((B-A)/A)
병력동원소집관리	683	616	616	554	554	△62	△10.1

4. 사업목적

- 군 복무를 마친 자 등의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
-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를 대비한 병력동원소집과 전시근로소집 지정·관리
- 병력동원소집 지정자에 대해 평시 훈련 실시, 동원절차 숙달 및 기능별 임무수행 능력 배양
- 지자체 전시 병무전담직원을 평시에 임무교육 실시, 전시 병무행정 수행능력 제고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병역법 제44조 ~ 제54조, 제75조, 제75조의2, 83조
- 병역법 시행령 제94조 ~ 제105조, 제142조
- 병무청 훈령 제1460호(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)
- 병무청 훈령 제1499호(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)
- 병무청 훈령 제1531호(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)

② 추진경위

- (1963년) 근무연습소집 실시
- (1968년) 향토예비군 창설
- (1983년) 병력동원(훈련)소집으로 명칭 변경
- (2014년) 지자체 전시 병무행정 일부 수행, 병무담당 전시임무교육

6.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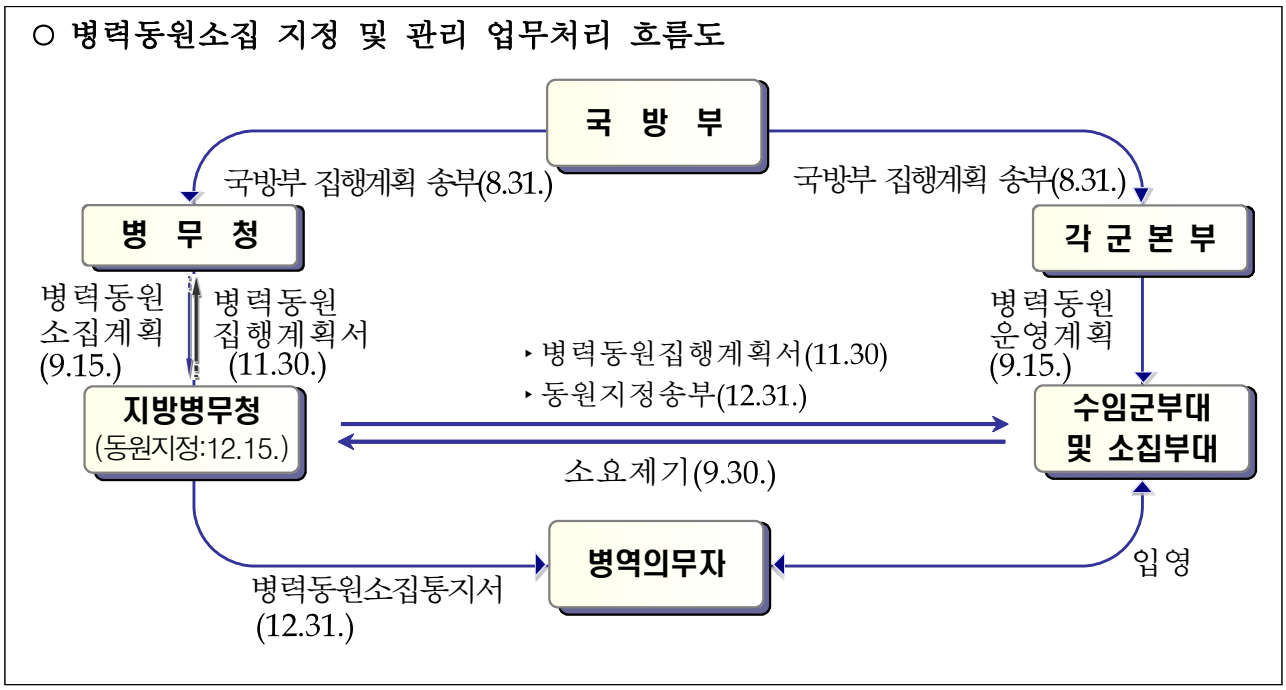
- 사업기간 : 계속
- 사업규모 :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(단위 : 백만원)

연도	2015	2016	2017	2018	2019
사업비	828	770	719	684	616
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병무청
- 사업 수혜자 : 병력동원(훈련)소집 대상자, 전시 지자체 병무담당자

7. 사업 집행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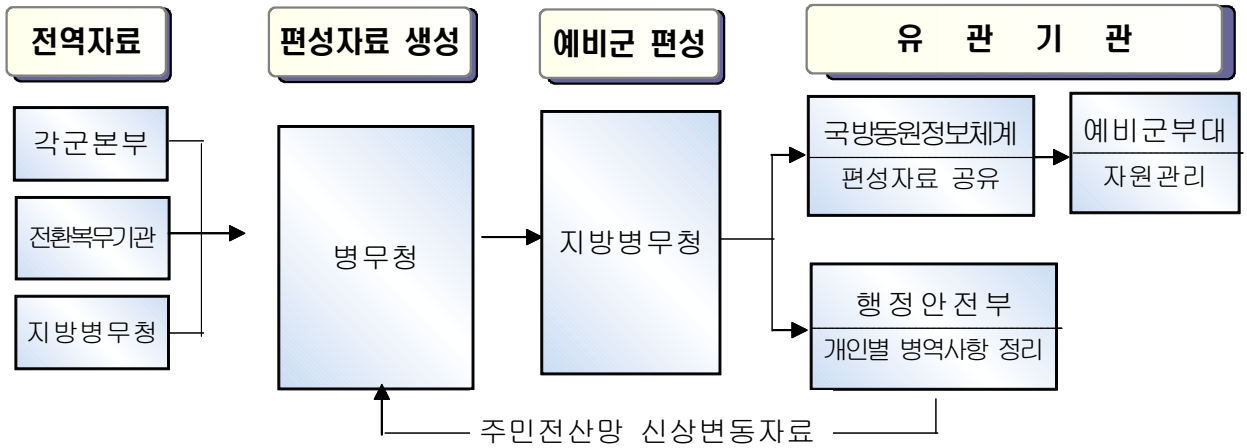
○ **병력동원소집 지정 및 관리 업무처리 흐름도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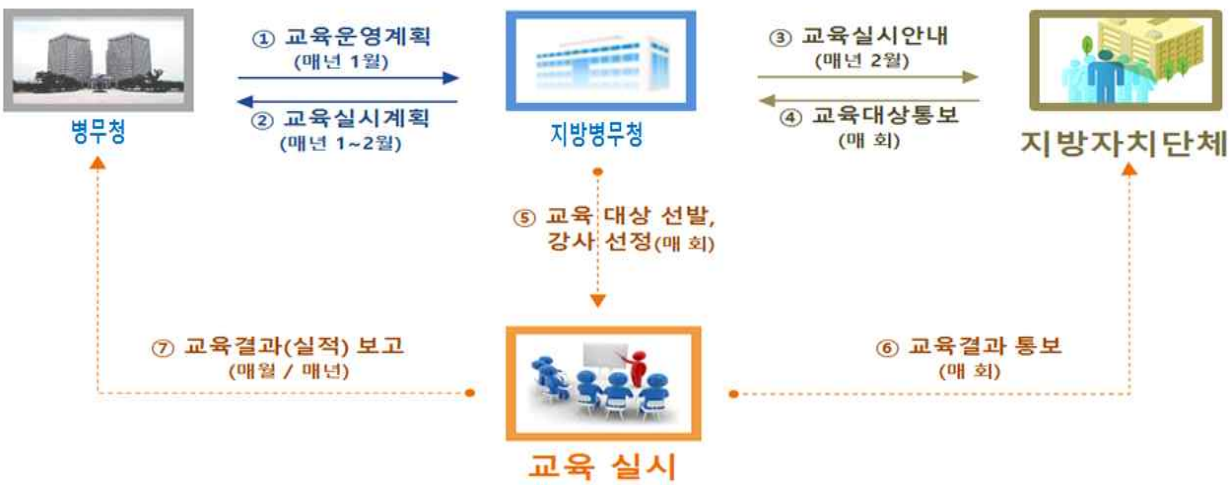
○ 병력동원훈련소집 업무흐름도



○ 예비군 편성 절차



○ 지자체 병무 전담직원 전시임무 교육



사 업 명
산업지원인력(1434-309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병무청	사회복무국		040	044
명칭					국방	병무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400	1434	309
명칭	보충역복무지원	보충역복무제도운영	산업지원인력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O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3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명	2018년 결산액	2019년 예산액(A)		2020년 예산액(B)		증감	
		본예산	추경	본예산	추경	금액 (B-A)	증감률(%) ((B-A)/A)
산업지원인력	309	310	310	370	370	60	19.4

4. 사업목적

- 군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자원의 일부를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 또는 해운·수산업체 등에 연구·생산·승선인력으로 지원하여 국가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, 유사 시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 등을 수송하기 위함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 : 병역법 제21조의2,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 5, 제36조 내지 제43조

② 추진경위

- 최초 시행 : 특례보충역제도('73.3.3.)
  · 한국과학기술원생, 방위산업체 및 기간산업체 종사자 등
- 1983년 :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폐지(병역법으로 흡수 통합)
- 1989년 : 연구요원과 기능요원으로 구분
- 2003년 : 복무기간 단축(전문연구요원 : 5년→ 4년, 산업기능요원 : 3년→ 34개월)
- 2004년 : 복무기간 단축(전문연구요원 : 4년→ 3년)
- 2007년 : 군 전공의 수련자 의과대학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근거 마련
- 2007년 :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신설
- 2008년 :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시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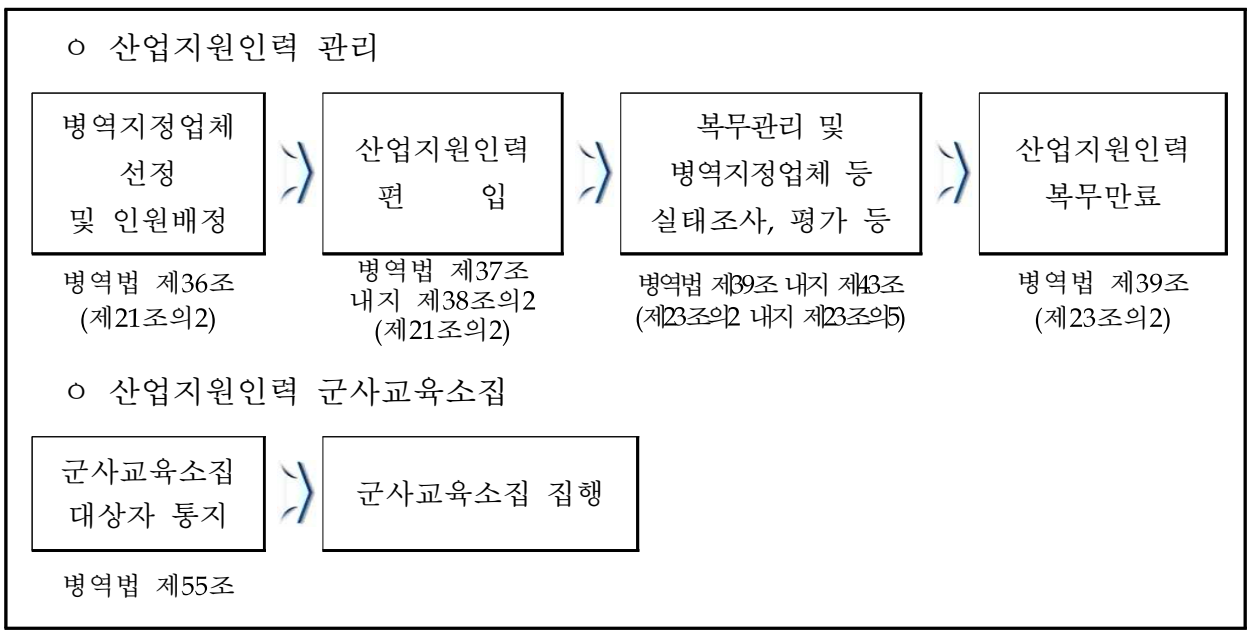
6.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계속사업
- 사업규모 :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(단위 : 백만원)

연도	2015	2016	2017	2018	2019
사업비	372	349	326	310	310
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병무청
- 사업 수혜자 : 병역의무자(전문연구요원·산업기능요원·승선근무예비역),병역지정업체 등의 장

7. 사업 집행절차



사 업 명
사회복무요원 교육(1434-319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병무청	사회복무국 (병무청)		040	044
명칭					국방	병무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400	1434	319
명칭	보충역복무지원	보충역복무제도운영	사회복무요원 교육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O						

3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명	2018년 결산액	2019년 예산액(A)		2020년 예산액(B)		증감	
		본예산	추경	본예산	추경	금액 (B-A)	증감률(%) ((B-A)/A)
사회복무요원 교육	8,095	9,004	9,004	9,460	9,460	456	5.1

4. 사업목적

- 공무수행자로서 사회복무요원의 기본자세, 책임의식 및 봉사정신 함양
- 복무기본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통한 복무부실 사전예방과 성실복무 유도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 : 병역법 제33조의2, 제75조 내지 제75조의3

② 추진경위

- 대통령 지시('04. 6. 1. 제25회 국무회의 시)
  ·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관리방안 국무회의 보고
- 병무청, 공익근무요원제도 개선방안 국무회의 보고('04. 8. 31.)
  · 공익성·효율성·국민편의성 기준에 따라 인력운영, 직무 및 정신교육 강화 등
- 병무청, 공익근무요원제도 개선 추진단 구성('06. 7. 11.)

- 병역법 제33조의2 신설('07. 5. 17.)
  · 병무청장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와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소양교육과 직무교육 실시 근거 마련
- 공익근무요원제도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및 대국민 발표('07. 7. 10.)
  · 책임감과 직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계 구축
- 공익근무요원 교육센터 설치 및 복무기본교육 등 실시('08년)
- 병역법 제33조의2 개정('09. 6. 9.)
  · 직무교육 주체 변경(병무청→관계 중앙행정기관), 복무지도교육 실시근거 마련
-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관련 병역법 개정('13. 6. 4.)
  · 공익근무요원 → 사회복무요원(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)
- 사회복무연수센터 개원('16. 3. 2.)
- 병역법 제33조의2 개정('17. 3. 21.)
  · 현역복무부적합자 등에 대한 복무지도교육 실시 근거 마련

6.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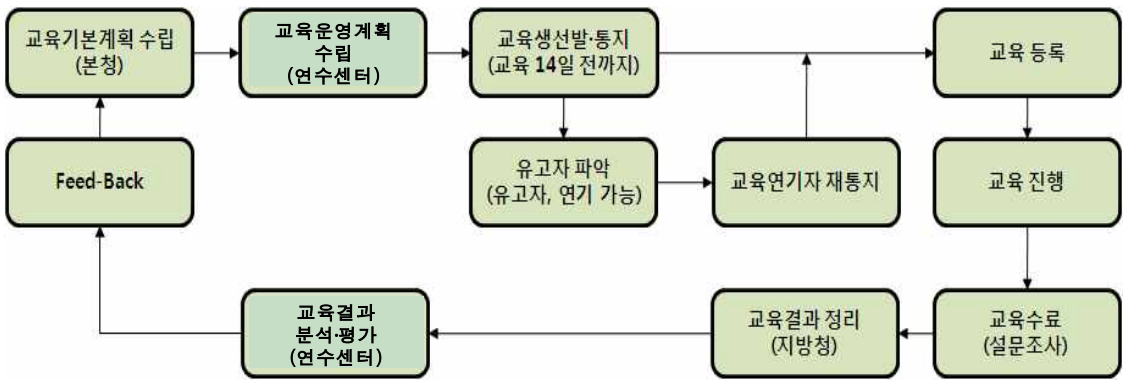
- 사업기간 : 계속사업
- 사업규모 :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(단위 : 백만원)

연도	2015	2016	2017	2018	2019
사업비	9,897	9,884	9,009	8,195	9,004
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병무청
- 사업 수혜자 : 사회복무요원, 복무기관, 일반 국민

7. 사업 집행절차

- 교육운영 절차도



* 관련 법령 및 규정 : 병역법 제33조의2, 병역법시행령 제67조 및 제68조,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

사 업 명
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(1434-320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병무청	사회복무국 (병무청)		040	044
명칭					국방	병무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400	1434	320
명칭	보충역복무지원	보충역복무제도운영	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O						

3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명	2018년 결산액	2019년 예산액(A)		2020년 예산액(B)		증감	
		본예산	추경	본예산	추경	금액 (B-A)	증감률(%) ((B-A)/A)
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	1,307	1,349	1,349	1,710	1,710	361	26.8

4. 사업목적

-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무지도를 통한 사전 복무부실 예방 복무관리 체계 구축
- 자긍심 고취 및 권익보호 등으로 사회복무요원 성실복무 유도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 : 병역법 제29조 내지 제33조, 제43조, 제65조, 제73조

② 추진경위

- 공익근무요원 제도개선 관련 병역법 개정('07. 5. 17.)
  · 병무청장에게도 관리감독권 부여 등 관리체계 개선(병역법 제31조)
-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관련 병역법 개정('09. 6. 9.)
  · 복무관리 담당직원 지정 등 명확화(병역법 제31조의2)
- 총리실 주관 국가정책조정회의 "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개선방안" 선정·추진('09. 7. 31.)
  ·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제도 도입 및 복무기강 강화 등

-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개선 관련 병역법 개정('11. 5. 24.)
  · 소집해제자 보상근거 마련 및 근무태만자 처벌규정 강화 등(병역법 제32조, 75조, 89조의3)
-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관련 병역법 개정('13. 6. 4.)
  · 공익근무요원 → 사회복무요원(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)
- 부적합 신청 요건 완화 병역법 개정('16. 5. 29.)
  · 부적합 소집해제 신청 전 재신체검사 생략 가능(병역법 제65조제11항)

6.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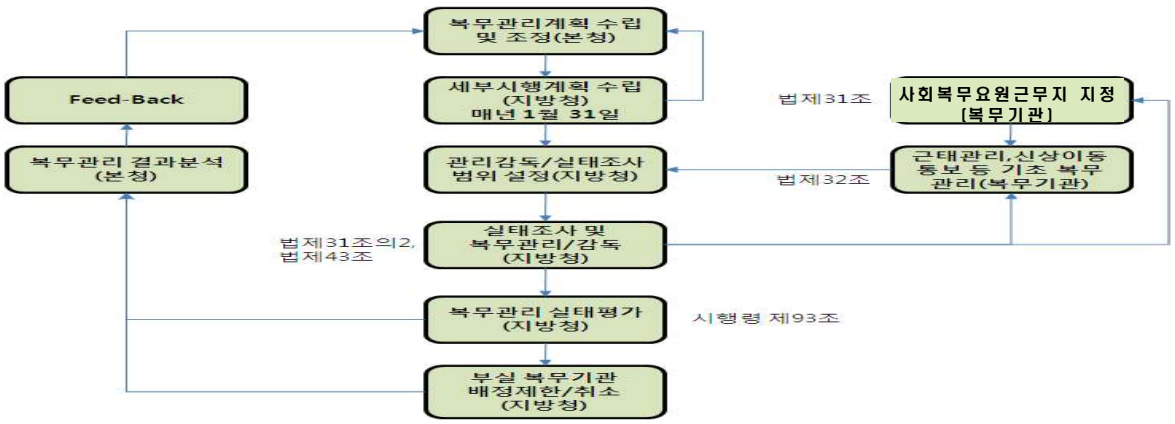
- 사업기간 : 계속사업
- 사업규모 :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(단위 : 백만원)

연도	2015	2016	2017	2018	2019
사업비	1,450	1,409	1,363	1,339	1,349
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병무청
- 사업 수혜자 : 사회복무요원, 복무기관, 일반 국민

7. 사업 집행절차

-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업무 절차도



* 관련 법령 및 규정 : 병역법 제31조, 제31조의2, 제32조, 제43조, 병역법시행령 제93조,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

-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업무 절차도

복무기관장	➡	지방청장	➡	심사위원회	➡	지방청장
소집해제 신청		사실조사/확인 정밀진단/검사 * 민간병원 위탁검사		부적합 심사 * 외부전문가 40% 이상 * 2/3이상 찬성, 의결		심사결과 처분 * 가 결 : 소집해제 * 부 결 : 계속복무

* 관련 법령 및 규정 : 병역법시행령 제135조의3, 136조제2항, 병역법시행규칙 제95조의3 및 제96조의2,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

사 업 명
인 건 비(7101-100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병무청	기획조정관실		040	044
명칭					국방	병무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100	7101	100
명칭	병무행정지원	인건비	인건비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3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명	2018년 결산액	2019년 예산액(A)		2020년 예산액(B)		증감	
		본예산	추경	본예산	추경	금액 (B-A)	증감률(%) ((B-A)/A)
인건비	119,328	128,701	128,701	133,284	133,284	4,583	3.6

4. 사업목적

- 공무원 보수, 기타직 보수, 연가보상비 등 지급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공무원 보수규정, 공무원 수당규정

6.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계속사업
- 사업규모 :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(단위 : 백만원)

연도	2015	2016	2017	2018	2019
사업비	110,391	117,234	118,360	123,092	128,701
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병무청
- 사업 수혜자 : 병무청 직원

7. 사업 집행절차 : 해당 없음

사 업 명
총액인건비대상 기본경비(7111-200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병무청	기획조정관실		040	044
명칭					국방	병무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100	7111	200
명칭	병무행정지원	기본경비	총액인건비대상 기본경비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3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명	2018년 결산액	2019년 예산액(A)		2020년 예산액(B)		증감	
		본예산	추경	본예산	추경	금액 (B-A)	증감률(%) ((B-A)/A)
총액인건비대상 기본경비	3,349	3,877	3,877	3,906	3,906	29	0.7

4. 사업목적 : 병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소요경비 지원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2006년 총액인건비제도 도입
-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(기획재정부)
- 2019년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(인사혁신처)

6.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계속사업
- 사업규모 :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(단위 : 백만원)

연도	2015	2016	2017	2018	2019
사업비	3,268	3,426	3,480	3,539	3,877
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병무청
- 사업 수혜자 : 병무청 직원 및 가족

7. 사업 집행절차 : 해당 없음

사 업 명
총액인건비비대상 기본경비(7111-250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병무청	기획조정관실		040	044
명칭					국방	병무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100	7111	250
명칭	병무행정지원	기본경비	총액인건비비대상 기본경비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O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3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명	2018년 결산액	2019년 예산액(A)		2020년 예산액(B)		증감	
		본예산	추경	본예산	추경	금액 (B-A)	증감률(%) ((B-A)/A)
총액인건비비대상 기본경비	6,034	5,753	5,753	5,958	5,958	205	3.6

4. 사업목적

- 병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서·운영 소요경비 지원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(기획재정부)

6.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계속사업
- 사업규모 :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(단위 : 백만원)

연도	2015	2016	2017	2018	2019
사업비	5,920	6,023	6,183	5,995	5,753
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병무청

7. 사업 집행절차 : 해당 없음

사 업 명
병무행정안내(7134-310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병무청	대변인실		040	044
명칭					국방	병무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100	7134	310
명칭	병무행정지원	운영지원	병무행정안내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3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명	2018년 결산액	2019년 예산액(A)		2020년 예산액(B)		증감	
		본예산	추경	본예산	추경	금액 (B-A)	증감률(%) ((B-A)/A)
병무행정안내	1,503	1,753	1,753	1,831	1,831	78	4.4

4. 사업목적

- 수요자 맞춤식 홍보로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
- 병역제도 전반과 제도개선 성과에 대한 국민인지도 제고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병역법 제82조(병역의무 이행의 장려)

·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(宣揚)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.

- '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'(대통령령 제24453호, 2013.3.23.) 제3조

·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,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수행하며, 국민의 알 권리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.

② 추진경위

- 병무청 창설 이후 병무행정 홍보를 추진. 최근에는 정책성과 확산 위한 언론홍보, 유튜브 등 SNS, 현장방문 정책소통, 국민 참여 소통프로그램 운영 등 소통 강화
-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문 발굴 및 선양사업 실시, 명문가 신청 및 선정자 매년 증가추세, 병역이행 자긍심 제고 정책에 기여
- 2007년부터 병역의무 자진이행자 우대사업 시작, 질병치유 후 자원입영 또는 국외영주권 취득자 중 자원입영자 증가 추세
- 2010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군 장병에게 감사편지 보내기 추진, 매년 감사편지 보내기를 통한 감사편지 지속 증가 등 가시적 성과 도출
- 2011년부터 현역병 입영문화제 추진, 입영장병 격려·축하 및 가족에게 감사를 전달
- 2011년부터 올바른 병역관을 심어주기 위한 전국 어린이 그림/글짓기 공모전 개최, 우수 작품에 대한 시상 및 기획전시로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
- 2014년부터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홍보의 날로 지정, 찾아가는 현장설명회 실시
- 2015년부터 정책현장 방문, 현장 간담회 등 정책소통과 현장 정책제언 수렴
- 2019년부터 병역공감대 확산을 위해 일반국민 대상 '공정병역 UCC 공모전' 개최

6.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계속
- 사업규모 :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(단위 : 백만원)

연도	2015	2016	2017	2018	2019
사업비	1,707	1,630	1,543	1,511	1,753
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병무청
- 사업 수혜자 : 병역의무자, 병역이행자, 부모 등 일반국민

7. 사업 집행절차

□ 대언론홍보

○ 언론홍보 : 연중 보도계획 수립(전년 12월) → 보도자료 배포(수시)

□ 온라인 여론 모니터링

○ 온라인 및 주요언론 보도내용 실시간 모니터링 → 내용분석 → 오·왜곡 보도, 부정적 여론 대응(수시) → 오·왜곡 정보 확산 방지

□ 병무행정 미디어홍보

○ 연중 주요정책·제도변경사항 등 홍보계획 수립(1월) → 홍보콘텐츠 등 제작 및 인터넷·대중매체·교통매체 활용 홍보시행(수시) → 정책인지도 제고 등

□ 온라인 커뮤니티 홍보

○ 주요정책, 캠페인 등 홍보과제 선정(1월) → 홍보콘텐츠 등 제작 → SNS, 블로그, 각종 커뮤니티 활용 캠페인 등(수시) → 정책인지도 제고 등

□ 병무홍보요원 운영

○ 기본계획 수립 및 공모(전년 12월~1월)→ 병무홍보요원 선발 및 위촉(2월) → 정책현장 등 방문 견학·체험 후 홍보콘텐츠(기사 유형) 생산 → 기관 블로그 등 활용 콘텐츠 확산 → 새로운 시각에서의 홍보소재 발굴, 국민 친화 홍보

□ 병역명문가 선양사업

○ 기본계획 수립(1월) → 병역명문가 집중 접수(1~2월) → 표창대상 선정(3월) → 시상식 개최(5~6월) → 선양사업 등 추진(연중) → 병역명문가에 대한 존경과 자발적 병역이행 사회분위기 조성

□ 현역병 입영문화제

○ 기본계획 수립(2월) → 입영당일 군부대등과 협조, 부대내에서 입영자 및 가족대상 문화예술공연, 편지쓰기, 무료 즉석사진 촬영 제공 등 행사(4~11월) → 병역이행 자긍심 제고

□ 자원병역이행자 문화탐방

○ 기본계획 수립(6~7월) → 각 군 등에 대상자 선발 의뢰 및 확정(8월) → 문화탐방(9~10월) → 병역의무 자진이행에 대한 자긍심 및 애국심 고취

□ 모범 사회복무요원 초청행사

○ 기본계획 수립(3~7월) → 모범사회복무요원 및 우수복무관리직원 선정 → 사회복무대상 시상식 개최 및 문화탐방행사(6~12월) → 사회복무요원 및 복무관리직원의 사기진작 및 정체성 확립

사 업 명
병무행정운영(7134-317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병무청	기획조정관실		040	044
명칭					국방	병무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100	7134	317
명칭	병무행정지원	운영지원	병무행정운영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3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명	2018년 결산액	2019년 예산액(A)		2020년 예산액(B)		증감	
		본예산	추경	본예산	추경	금액 (B-A)	증감률(%) ((B-A)/A)
병무행정운영	7,891	7,659	7,659	7,842	7,842	183	2.4

4. 사업목적

□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

-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면탈 사전방지
-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로 병역자진이행 분위기 조성

□ 공직자 등 병적관리제도(연예인, 체육인, 고소득자 확대) 운영으로 성실한 병역이행 풍토 조성 및 공정한 병역문화 확산

□ 투명하고 신뢰받는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행정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자문위원회 구성/운영

□ 병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소요경비 지원

-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우편료,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비 지원 등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
- 병역법 제77조의4(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등)
- 병역법 제6조(병역의무부과통지서의 송달)
-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4조 제2항
-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(병무청 훈령 제1188호)
- 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(병무청 훈령 제1577호)

② 추진경위

- '02. 7. 1. 지방행정관서 병무행정 위임업무 폐지, 병무청 독자수행체제 전환
- '03. 7월 병무행정시민참여위원회 규정 제정
- '03. 8월 병무행정발전시민참여위원회 발족
- '05년도 병무행정학술연구용역 기본계획 수립
- 공직자등의 병역사항공개 범위확대('04년까지 1급이상 → '05년부터 4급이상)
- '07. 5.17. 병역사항신고시 병적증명서 첨부제도 폐지 및 병역사항 변동사항 자체확인 공개
- '07.12.14. 신고의무자 본인도 사생활 비밀관련 일부 질병명 등 비공개 요구권 확대
- 공직자 등 병적관리제도 병역법 근거 마련('15.12.15.)
- 공직자 등 병적관리대상 확대(연예인, 체육인, 고소득자) 병역법 개정('17.3.21.)

6.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계속사업
- 사업규모 :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(단위 : 백만원)

연도	2015	2016	2017	2018	2019
사업비	9,083	8,302	7,727	8,055	7,659
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병무청

7. 사업 집행절차

1. 공직자 등

신고의무고지 — 병역사항 (변동)신고의무고지서 송부
(신고기관의 장 ⇒ 신고의무자)

⇩

병역사항(변동) 신 고 —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이내 신고기관의 장에게 신고
(변동신고 : 매년 12월말 기준 다음해 1월에 신고.
다만, 18세가 되는 자의 변동신고는 그 해 1월)

※ 신고기간 내 신고 불가능시 1개월 범위내 연장 가능
(신고의무자 → 신고기관의 장에게 신청)

⇩

접수증 교부 — 신고기관의 장 ⇒ 신고의무자

⇩

신 고 사 항 병무청 통보 — 신고기관의 장 ⇒ 병무청장·지방병무청장
신고를 받은날로부터 1개월이내 (신고보류기관은 제외)
※ 신고의무자 중 신상변동자(전출, 퇴직 등)는
즉시 통보

⇩

신 고 내 용 확 인·조 사 — 병무청장·지방병무(지)청장 ⇒ 신고의무자 또는 신고기관의 장

※ 신고대상자의 고의 신고누락 또는 허위신고 :
수사기관에 고발

⇩

공개전 사전열람, 이의신청 — 병역사항공개서 작성, 병무청 홈페이지 사전 게시
신고의무자(이의신청) ⇒ 병무청장(확인·공개)

⇩

관 보 게 재 병무청홈페이지게시 — 신고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(병무청장)

2. 공직선거후보자, 국회의 임명동의 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

병역사항 신고 (후보자 등록)

- 공직선거후보자 ⇒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
- 국회의 임명동의 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 ⇒ 국회

※ 제출서류 : 병역사항신고서, 병적증명서, 복무확인서

○ 후보자 병역사항 공개(관할 선거관리위원장, 국회의장)

⇩

신고내용 확인 의 뢰

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국회의장 ⇒ 병무청장

⇩

당 선 인 병역사항 통보

- 공직선거후보자 :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장, 당선이 확정된 때
- 국회의 임명동의 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 : 국회의장, 임명동의안(선출안)이 의결된 때

※ 병역사항 변동신고는 일반 신고의무자와 동일

⇩

신고내용 확인 · 조사

— 병무청장·지방병무청장 ⇒ 신고의무자 또는 신고기관의 장

⇩

공개전 사전열람 · 이의신청

— 병역사항공개서 작성, 병무청 홈페이지 사전 게시
신고의무자(이의신청) ⇒ 병무청장 (확인·공개)

⇩

관 보 게 재 병무청홈페이지게시

— 신고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(병무청장)

3.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절차



사 업 명
대체역 심사(7134-318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병무청			040	044
명칭					국방	병무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100	7134	318
명칭	병무행정지원	운영지원	대체역 심사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3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명	2018년 결산액	2019년 예산액(A)		2020년 예산액(B)		증감	
		본예산	추경	본예산	추경	금액 (B-A)	증감률(%) ((B-A)/A)
대체역 심사	-	-	-	2,424	2,424	2,424	순증

4. 사업목적

- 헌법재판소의「병역법」제5조에 대한 '헌법 불합치' 결정('18.6.28.)에 따라 대체복무제도 도입・운영
-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, 대체역 편입심사의 공정성 확보로 국민이 공감하는 대체복무제도 운영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병역법 제5조(병역의 종류)
-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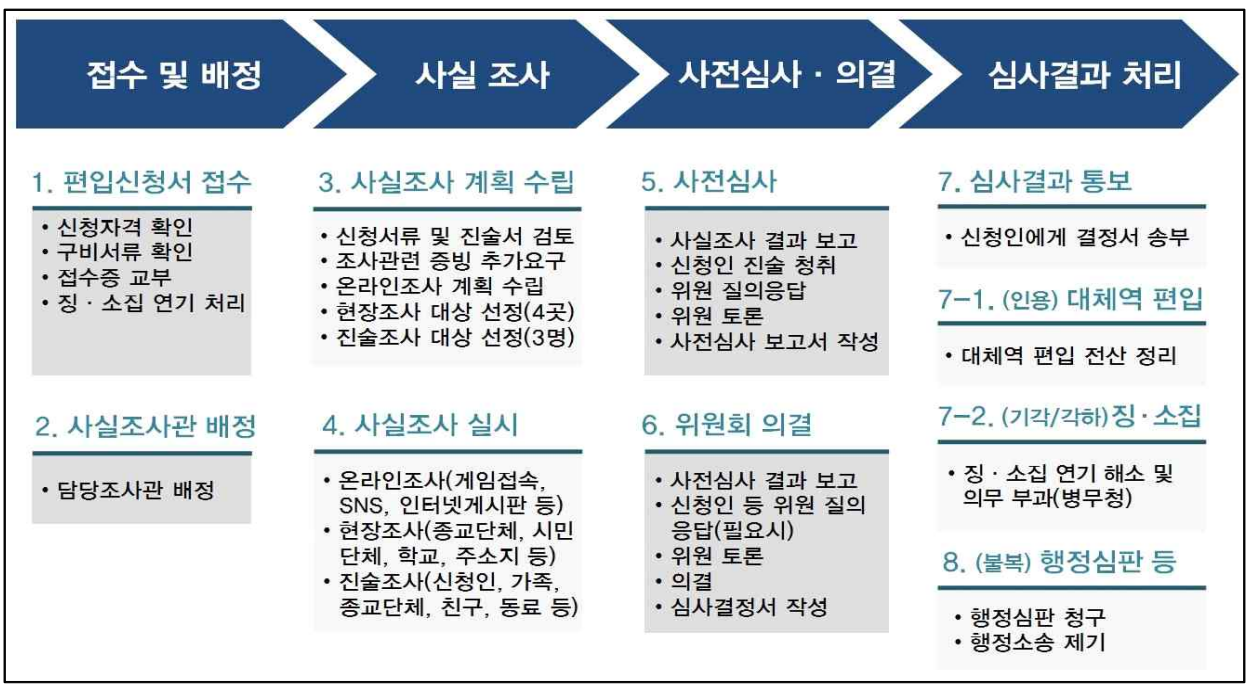
② 추진경위

-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('18.6.28.)
- 대체복무제도 정부안 발표('18.12.28.)
- 대체복무제도 법률안 국회제출('19.4.25.) 및 국방위 상정('19.7.3.)
- 대체복무 법률안 국회 국방위원회·법제사법위원회 의결('19.11월)
- 대체복무 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('19.12.27.) 및 시행('20.1.1.)

6.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신규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병무청
- 사업 수혜자 : 병역의무자

7. 사업 집행절차



사 업 명
병무청 건강보험부담금(7134-313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병무청	운영지원과		040	044
명칭					국방	병무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100	7134	313
명칭	병무행정지원	운영지원	병무청 건강보험부담금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3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명	2018년 결산액	2019년 예산액(A)		2020년 예산액(B)		증감	
		본예산	추경	본예산	추경	금액 (B-A)	증감률(%) ((B-A)/A)
건강보험부담금	3,823	4,178	4,178	4,489	4,489	311	7.4

4. 사업목적

- 공무원의 질병·부상에 대한 예방·진단·치료·재활과 출산·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 지원으로 공무원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: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(보험료의 부담)

* 직장가입자 국가공무원인 경우 보수월액보험료는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

6.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계속사업
- 사업규모 :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(단위 : 백만원)

연도	2015	2016	2017	2018	2019
사업비	3,535	3,673	3,802	3,966	4,178
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병무청
- 사업 수혜자 : 병무청 공무원과 그 가족

7. 사업 집행절차 : 해당 없음

사 업 명
병역의무자지원(7135-314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	병무청	입영동원국 자원관리과		040	044
명칭					국방	병무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100	7135	314
명칭	병무행정지원	병역의무자 지원	병역의무자 지원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3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명	2018년 결산액	2019년 예산액(A)		2020년 예산액(B)		증감	
		본예산	추경	본예산	추경	금액 (B-A)	증감률(%) ((B-A)/A)
병역의무자지원	28,179	32,640	32,640	31,652	31,652	△988	△3.0

4. 사업목적

-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(교통비, 숙박비, 식비)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로 보전
-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건강보험료의 정부지원으로 안정적 복무여건 조성
- 병역판정검사 과정 및 군 입영(병력동원훈련소집 등 포함) 이동 중에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금(재해·휴업) 및 치료비를 부담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병역의무자여비

▪ 병역법 제79조(여비 등의 국고부담)

▪ 병역법시행령 제158조(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)

▪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(병무청 훈령 제1556호, '19.1.25.)

- 사회복무요원건강보험료

▪ 병역법 제77조의3(국민건강보험료의 정부지원)

▪ 병역법시행령 제155조의3(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)

- 병역의무자(징·소집, 동원훈련 등) 보상금 및 치료비

▪ 병역법 제75조(보상 및 치료) 및 제75조의2(재해 등에 대한 보상)

② 추진경위

- 병역의무자여비

▪ '01년 이전 : 지방병무행정 보조금으로 편성

▪ '02년 이후 : 병무청 예산으로 편성

- 사회복무요원건강보험료

▪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근거 마련(병역법개정 제77조의3, '13. 6. 4.)

▪ 건강보험료 정부지원 범위 및 기간 등 명확화(병역법시행령개정 제155조의3, '13. 12. 4.)

▪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사업 시행('14. 1. 1.)

- 병역의무자(징·소집, 동원훈련 등) 보상·치료

▪ 보상 및 치료 관련 병역법 신설('15.12.15.공포)

* 시행 : 병력동원훈련소집 등('16.3.16.), 징집 및 소집('16.6.16.)

6.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계속사업

- 사업규모 :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(단위 : 백만원)

연도	2015	2016	2017	2018	2019
사업비	28,492	29,582	30,177	29,769	32,64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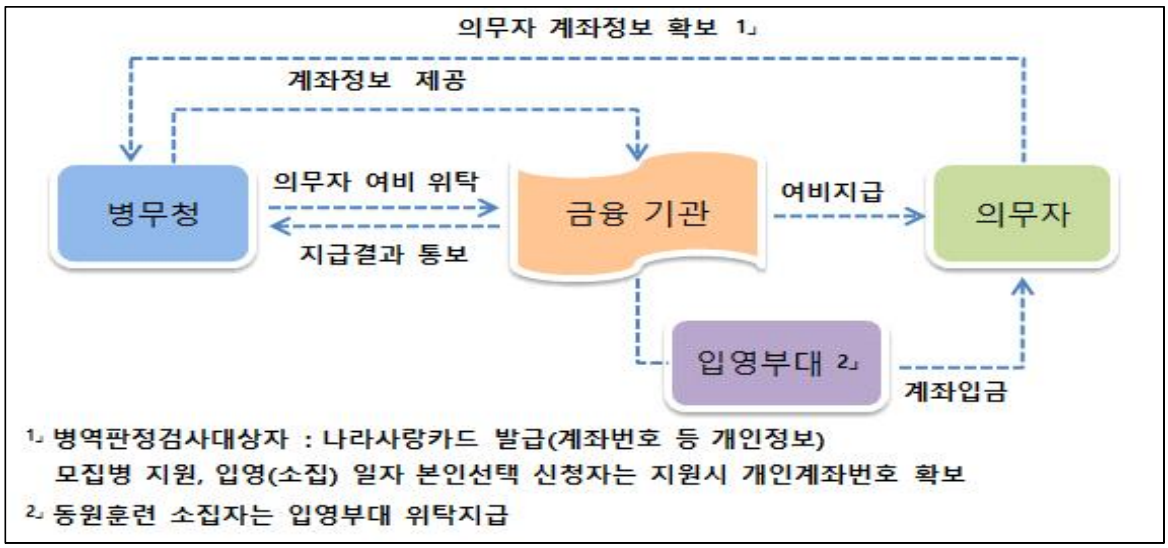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
- 사업시행주체 : 병무청

- 사업 수혜자 : 병역판정검사, 징·소집 입영 등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

7. 사업 집행절차

□ 병역의무자여비 지급절차



□ 보상 및 치료비

○ **위탁치료비 업무처리도**

- 의료시설 치료

병역의무 이행자	지방병무(지)청	국가/지자체 의료시설 민간의료시설	지방병무(지)청	병역판정 검사 대상자
신 청	① 접 수 ② 사실관계확인 ③ 미비서류보완요청 ④ 전공상심사 ⑤ 공상자 치료의뢰	치료 및 치료비 청구	전공상심사의결서 금액결정 관련서류	지급여부 결정 통보

- 본인부담 치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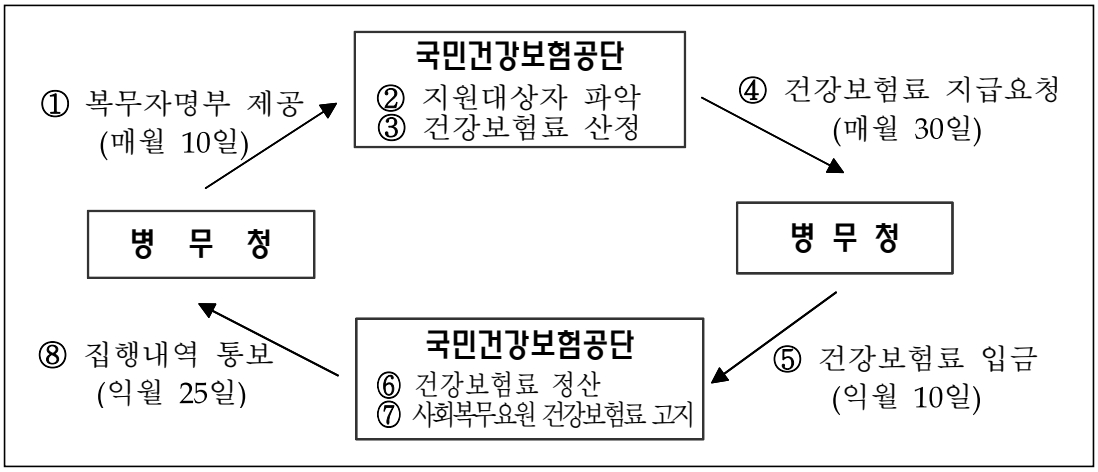
병역의무이행대상자 / 가족	지방병무(지)청	병역판정검사대상자 / 가족
신 청	① 접수, 사실관계 확인 ② 미비서류 보완요청 ③ 전공상심사, 금액결정	지급여부 결정 통보

○ **휴업보상금 업무처리도**

병력동원소집 등 입영자	지방병무(지)청	병력동원소집 등 입영자
신 청	① 접수, 사실관계 확인 ② 미비서류 보완요청 ③ 전공상심사, 금액결정	지급여부 결정 통보

□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

- 건강보험료 지급 절차도



* 관련 법령 및 규정 : 병역법 제77조의3, 병역법시행령 제155조의3,
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급규정

사 업 명
사회복무요원운용(7135-315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	병무청	운영지원과		040	044
명칭					국방	병무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100	7135	315
명칭	병무행정지원	병역의무자 지원	사회복무요원운용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3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명	2018년 결산액	2019년 예산액(A)		2020년 예산액(B)		증감	
		본예산	추경	본예산	추경	금액 (B-A)	증감률(%) ((B-A)/A)
사회복무요원 운용	1,831	1,904	1,904	3,440	3,440	1,536	80.7

4. 사업목적 : 병무청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보수, 교통비, 중식비, 피복비 지급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병역법 제31조 (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)
- 병역법시행령 제62조 (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)

6.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계속사업
  - 사업규모 :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(단위 : 백만원)

연도	2015	2016	2017	2018	2019
사업비	1,122	1,188	1,289	1,793	1,904
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병무청
- 사업 수혜자 : 병무청 복무 사회복무요원

7. 사업 집행절차 : 해당 없음

사 업 명
시설관리(7136-441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	병무청	운영지원과		040	044
명칭					국방	병무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100	7136	441
명칭	병무행정지원	청사확보 및 시설관리	시설관리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3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명	2018년 결산액	2019년 예산액(A)		2020년 예산액(B)		증감	
		본예산	추경	본예산	추경	금액 (B-A)	증감률(%) ((B-A)/A)
시설관리	1,978	1,626	1,626	1,943	1,943	317	19.5

4. 사업목적

□ 인천국제공항 내 병무민원센터 사무실 임차료

□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실시

- 병무청 제3종 시설물(8개청 16개 건축물)에 대해 안전점검 전문기관 용역에 상·하반기 정기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등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

□ 청사 유지·보수

- 노후 지방청사 시설 유지·보수 관리
- 직제개정 및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른 사무공간 재배치 등 청사환경 개선으로 직원 및 민원인 편의 제공

□ 직원숙소 운영·확충으로 비연고지 근무자 경제적 부담완화 및 생활안전 지원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국유재산법 제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

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, 제2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, 제9조

③ 정부청사관리규정

6.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계속사업
- 사업규모 :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(단위 : 백만원)

연도	2015	2016	2017	2018	2019
사업비	2,870	1,556	2,406	2,089	1,626
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병무청
- 사업 수혜자 : 병무청 공무원, 병무청 방문 민원인

7. 사업 집행절차

□ 청사 및 직원숙호 확보

청사수급관리계획(안) 제출 요청(행정안전부 → 각 부처) ⇒ 청사수급관리계획(안) 제출(병무청 → 행정안전부) ⇒ 청사수급관리계획 수립·통보(행정안전부 → 각 부처) ⇒ 예산요구(각 부처 → 기획재정부) ⇒ 심사, 확정(기획재정부 → 각 부처) ⇒ 청사 신·개축, 청사유지보수, 숙소매입 및 임차, 사무실 임차 등 사업추진

사 업 명
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(7137-315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	병무청	기획조정관실		040	044
명칭					국방	병무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100	7137	315
명칭	병무행정지원	직원교육훈련	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3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명	2018년 결산액	2019년 예산액(A)		2020년 예산액(B)		증감	
		본예산	추경	본예산	추경	금액 (B-A)	증감률(%) ((B-A)/A)
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	130	130	130	210	210	80	61.5

4. 사업목적

- 체계적·전문적 교육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과 혁신역량 개발
-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·서비스의 개선을 통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크게 제고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「공무원 인재개발법」 제8조(인재개발계획의 작성), 제10조(공무원의 자기개발 등), 제15조(인재개발의 평가 등)

6.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계속사업
- 사업규모 :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(단위 : 백만원)

연도	2015	2016	2017	2018	2019
사업비	155	147	137	130	130
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병무청
- 사업 수혜자 : 일반국민, 병무청 직원

7. 사업 집행절차

• 혁신역량 개발교육 운영

교육계획보고 및 계약의뢰 ⇨ 입찰공고 및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⇨ 착수계 승인 ⇨ 혁신역량 교육실시

• 공공서비스혁신 추진

추진계획 수립 ⇨ 우수사례 발굴 포상 ⇨ 우수사례 공유·확산

사 업 명
병무행정정보화(7138-501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병무청	병역자원국		040	044
명칭					국방	병무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100	7138	501
명칭	병무행정지원	병무행정정보화	병무행정정보화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O						

3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명	2018년 결산액	2019년 예산액(A)		2020년 예산액(B)		증감	
		본예산	추경	본예산	추경	금액 (B-A)	증감률(%) ((B-A)/A)
병무행정정보화	8,913	9,056	9,056	9,953	9,953	897	9.9

4. 사업목적

- 병무행정 정보화를 통한 투명·공정한 업무 환경 구축
- 병역의무자에게 최적화된 다양화 병역이행 정보화서비스 창출
- 지능정보화 등 미래지향적 정보시스템 지속적 개발
- 정보보호, 통신 등 정보화기반 운영성 확보와 각종 자산의 효율적 활용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 : 병역법, 병역법 시행령, 병역법 시행규칙

② 추진경위

- '82년 : 예비군업무의 조속한 전산화 실현(대통령 지시사항)
- '83년 : 병무행정 전산화 개발 및 발전 계획 수립
- '84년 : 병무행정 전산화 사업 승인
- '85~'90년 : 병무행정 정보화시스템(V1) 구축(태동기)
  · ('85년~'86년) 예비군업무 전산화→('87년~'88년) 징집, 소집업무의 전산화 →('89~'90년) 병역특례 및 국외여행업무의 전산화
- '92년 : 병무행정 정보화시스템(V2) 도입(기반구축)
- '99~'01년 : 병무행정 정보화시스템(V3) 재구축(Vision 21)
  · ('99년) BPR 및 종합계획(병무행정 VISION 21) 수립→('00년) 징·소집 시스템 재구축, 사무자동화시스템 구축→('01년) 동원 및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재구축
- '05~'07년 : 병무행정 정보화시스템(V4) 재구축(지식정보화)
  · ('05년) 정보화전략기획 수립→('06년) 병무행정 프로세스 분석 및 설계, 사업단 구성→('07년) 병무행정 프로세스 구현, 운영장비 도입
- '08~'09년 :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포탈시스템 구축
- '08~'09년 : 업무와 인터넷망 분리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
- '10년 : 주민등록번호 대신 병무청 고유번호에 의한 자원 활용체계 도입
- '11~'12년 : 병무민원 상담시스템 고도화 및 모바일 웹 및 앱 서비스 개발
- '13년 :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기반 강화를 위한 사이버안전센터 구축
- '14년~'15년 : 미래 선도형 차기 병무행정시스템(V5) 구축
  · 신(新)병무행정 정보화시스템 구축('12년 ISP→'14년 분석설계→'15년 구현)
- '16년 : 인천병무지청 개청('15년)에 따른 정보화시스템 도입
- '17년 : 감사관리시스템, 지자체 전시업무 및 교육포털 시스템 구축
  · 감사관리시스템 : 착오행정 예방, 사후 결함 식별 등을 위한 상시진단 시스템
  · 지자체 전시업무 및 교육포털 : 전시 지자체와 원활한 병무행정 수행, 신속한 병력동원 태세 확립을 위한 시스템

- ’18년 : 모바일 통지서 발송시스템 및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시스템 구축

· 병역이행 모바일 통지서 구축(앱 개선 포함) : 병역이행 통지서를 병무청 앱과 상용 앱(카카오 등)을 이용하여 모바일로 전달하는 시스템

·「공직자 등 사회관심계층 병적 별도관리」병역법 개정에 따른 시스템 구축

- ’19년 : 병무행정 DB성능 개선 및 병무행정 보안체계 고도화

· 병무행정 DB성능 개선 : 병무행정 주요 데이터베이스 구조 진단 및 성능 개선

· 병무행정 보안체계 고도화 : 인증체계 통합 및 문서보안 고도화

6.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계속
- 사업규모 :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(단위 : 백만원)

연도	2015	2016	2017	2018	2019
사업비	10,815	9,085	8,708	9,035	9,056
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 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병무청
- 사업 수혜자 : 병역의무자, 직원, 유관기관

7. 사업 집행절차

-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

사업계획 수립 → 제안규격서 작성 → 사전계약심사 → 계약의뢰 → 입찰(사전규격 공고, 본공고) → 사업자 선정(조달평가, 추가협상) → 분석 → 설계 → HW, SW 도입/시스템 구축 → 단위시험 →통합시험 → 검사/검수 → 사업종료